

노근리사건 희생자(사망자·행방불명자용) 결정(비결정) 통지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()	생년월일			
	주소					
	희생자와의 관계	의	전화번호			
희생자	성명 (한자)	()	생년월일		성별	[]남 []여
	신청	[]사망	년 월 일	사망		
	사유	[]행방불명	년 월 일경	행방불명		
	당시 등록기준지					
	당시 주소					
심의·결정 내용						

「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
희생자로 결정(비결정)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

직인